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. 3. 27 선고 2023가단11938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3. 13.

판 결 선 고 2024. 3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2016. 7. 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에게 7,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, 피고가 위 대여금 중 변제금 1,000만 원을 제외한 6,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,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, 6,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.

2. 적용법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3. 일부 기각하는 부분

원고는 이자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2016. 7. 6.부터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자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.

판사 김효정